

변리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문 1) 『변리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인 변리사가 변리사자격 범위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문 2)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전문조사인(회계사 등)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보험사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문 3)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고지의무』

>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4) 『배상청구기준』증권과 『소급담보일』이란 무엇입니까?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제 3 자 (의뢰인 포함)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즉,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로 인하여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급담보일 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이후의 업무가 계속 담보되지만 갱신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급담보일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없으므로 보험기간에 청구되어야 보상되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의 원칙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업무일이 속한 보험증권 가입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상청구 당시의 유효한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예) 2022.1.1 계약 조건 : 보상한도액 1억원 / 공제금액 2천만원 2023.1.1 갱신 조건 : 보상한도액 1억원 / 공제금액 1천만원 상기 가정하에 2022년 5월에 신고하 내용이 잘못되어 4천만원의 배상청구가 2023년 4월 1일에 된 경우 : 청구시점 기준인 2023년도 조건에 따라 공제금액 1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이 보상

LOCKTON COMPANIES Main 822.2011.0300 lockton.com



- 문 5) 소급담보일이 2020년 2월 1일이고 수임일은 2019년 12월1일이며 특허 출원일(업무일)이 2021년 3월 1일인 경우, 변리사의 과실로 인하여 특허출원에 하자가 있어 의뢰인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했다면 보상이 됩니까?
 - >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적용되고 있는 변리사배상책임보험에서 업무 수행일이 소급담보일자 이후이고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경우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건의 수임일은 소급담보일 이전이지만 업무수행일이 소급담보일보다 이후이므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을 발생 형태로 분류해 보면 작위에 의한 과실과 부작위에 의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작위에 의한 업무일은 통상 관련서류의 제출일이 될 것이며 부작위에 의한 업무일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기한의 마지막 날을 업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6) 『보상한도액』과 『공제금액』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 공제금액이란 자기부담금이라고도 하며 공제금액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문 7) 담보지역을 해외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변리사배상책임 단체보험은 담보지역이 대한민국에 한정됩니다. 해외지역 > 담보 필요성이 있어 단체요율 안내를 추진하였으나 소규모 개인회원부터 대형 법인까지 규모가 천양지차인 회원사에 대해 일괄 요율로 가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으로서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해외지역 담보가 필요한 회원은 따로 문의 주시면 설문서 작성 후 개별 보험료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8) 기술정보유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기술정보"의 우연한 "유출"로 기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액 : 5백만원(1청구당/연간총)
 - 자기부담금 : 1백만원(1청구당)

(특별약관에 대한 보상한도는 가입증명서에 명시되는 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연간총 보상한도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상내용은 보험종목에 적용되는 약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LOCKTON COMPANIES Main 822.2011.0300 lockton.com



문 9)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가. 피보험자의 악의적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 나. 전문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 다. 중상, 비방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 라.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관련 자문 업무 등
 - 마. 피보험자의 지불불능 및 파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 바.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단, 갱신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이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상함.
 - 사. 계약상 가중책임, 단, 법률상 배상책임은 담보함
 - 아. 결과적 책임 / 자.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문 10) 계약상 가중책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말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상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법률 규정상의 배상책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상의 가중책임이라고 합니다.

문 11)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예상 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 통보)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즉시 보험사에 서면으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4 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록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인으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12) 합동사무소의 요율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인 이상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합동 이거나 아니거나 불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LOCKTON COMPANIES Main 822.2011.0300 lockton.com



문 13) 합동사무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합동사무소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공유한 개별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의 책임액을 산정한 후 합동사무소에서 가입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합동사무소의 a,b,c,d 네명의 변리사가 보상한도액 3억/6억원, 자기부담금 1천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중 a와b가 서명을하고 업무를 수행한 건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이 4억인 경우, a와 b의책임비율과 무관하게 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손해액이 2억이라면 자기부담금 1천만원을 차감하고 1억9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a와b의 책임액은 동일하고 손해액이 2억인상황에서 a는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b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보험회사는 a의 책임액인 1억원에 대하여 보험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1천만원을차감한 9천만원을 지급하거나 a에게 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1억원의 구상권을행사하게 됩니다.

문 14) 합동사무소의 일부 변리사가 탈퇴한 경우 기존의 업무에 대하여 향후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보험료의 환급은 발생합니까?

▶ 탈퇴한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합동사무실에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을 한 후 탈퇴한 변리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에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면 합동사무소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고 탈퇴한 변리사는 탈퇴 후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보험조건에 따라 합동사무소에서 행했던 업무였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탈퇴하는 변리사를 해지하게 되면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해지를 하게 되면 탈퇴변리사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중의 업무에 대하여 보험혜택이 사라지므로 탈퇴변리사와 합동사무소간에 정산을 하고 탈퇴변리사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게 되면 합동사무소 요율을 사용할수 없고 개인 사무소 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보험료가 추가 발생하고 보상한도액과 공제금액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므로 록톤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 15) 합동사무소에서 한 명의 변리사가 탈퇴하고 새로운 변리사가 들어온 경우 보험의 대체가 가능합니까?

▶ 합동사무소 요율은 보상한도액과 공제금액을 공유한 개별가입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변리사가 보험담보를 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하여야 하며 소급담보일은 별도로 보험료를 안내한 날이 됩니다.

- 문 16)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며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또는 다른 합동사무소로 이동한 경우 소급담보일자의 적용은?
 - 합동사무소 요율로 가입한 경우는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개별가입이므로 기존의 소급담보일자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2월 1일 합동사무소로 가입하다가 2023년 1월 1일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보험을 갱신하였는데 2022년 5월에 수행한 업무로 2023년 4월에 사고가 인지되어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2023년 갱신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17) 개인별로 가입하고 있던 합동사무실의 변리사들이 합동사무소 요율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각 변리사의 소급담보일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문 18)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 요율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소급담보일자의 적용은?
 - 법인의 경우에는 소급담보일자의 적용이 기존의 합동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급담보일자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인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소급담보일자가 적용됩니다. 즉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로 가입하던 중의 업무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한 후 배상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급담보일자를 인정받을 수 없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기존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을 원하신다면 보험만료일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기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 19) 10명 이상인 합동사무소의 요율 안내는 어떻게 됩니까?
 - > 록톤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험회사와 협의한 후 기존에 안내된 합동사무소 요율에 비례하여 즉시 요율을 안내하겠습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변리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가입문의 TEL: 02-2011-0300 이순옥 상무 / 윤원 이사 / 윤자영 차장 / FAX: 0503-8379-2008 및 상담 박순정 과장 / 이윤아 주임 02-2011-0301/2

LOCKTON COMPANIES Main 822.2011.0300 17th Floor, Cheonggye Hankook Bldg., #149 Seorin-Dong, Jongro-Gu, Korea lockton.com